

1. 개정이유

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, 인적사항 등 선임사실을 변경하는 신고서 양식을 마련하고, 학교시설·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서 양식 보완(안 제5조제1항)

-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 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

나.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서 양식 보완(안 제8조의2제1항)

-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, 등급 및 수첩발급번호 등 인적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양식을 보완

다. 학교시설,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(안 별표 1 제3호, 부칙 제2조제1항)

- 학교시설,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기를 타 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맞도록 자격 완화 및 선임시기 연장

라.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

-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처리기한을 3일로 늘리고, 별지 서식의 오·탈자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

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유지관리”를 각각 “유지관리 및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“성명 또는”을 “성명,”으로, “말한다)”를 “말한다),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리주체 변경신고서”를 “선임사실 변경신고서”로 한다.

2.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,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

제8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졸업증명서

별표 1 제3호의 선임자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지관리자

별표 1 비고 제2호 중 “건축물등이”를 “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축물등이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
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

별지 제9호의2서식 중 “즉시”를 “3일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9호의7서식 중 “영업소 소재지”를 “주소”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
제3호 중 “졸업증명서 원본(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합니다)”을
“졸업증명서”로 하며, 같은 뒤쪽 제4호 중 “(2.5cm×3cm) 2매”를 “(2.5cm
×3cm)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의8서식 중 “영업소 소재지”를 “주소”로 한다.

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제2호 중
“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:”을 “공동주
택: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공동주택:”을 “공동주택, 영 제14조제1
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: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
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: 2024년 4월
17일

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사실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 (관리주체)	상호(명칭)		대표자 성명	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			전화번호	
대상 건축물등	건축물	연면적()		용도()	
	공동주택	세대수()			
	그 밖의 건축물등	연면적()		용도()	
	주소				
구 분		변경 전		변경 후	
관리주체	상호(명칭)				
	대표자 성명				
	사업자등록번호				
	주소				
기계설비 유지관리자 [] 책임 [] 보조	주소				
	등급				
	수첩발급번호				

「기계설비법」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관리주체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.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명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- 1. 신고인(관리주체)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.
- 2.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, 용도,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, 용도, 세대수를 적습니다.
- 3. 그 밖의 건축물등은 「기계설비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.
- 4. 첨부서류에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착공 전 확인 등) ① 영 제1 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 호서식에 따르며, 신청인은 이 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·③ (생략)	제5조(착공 전 확인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 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 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 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(이하 “유지관리 기준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. 1. 기계설비 <u>유지관리</u>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. 기계설비 <u>유지관리</u> 점검 참 여자의 역할 및 업무내용 3. 기계설비 <u>유지관리</u> 점검의	제7조(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유지관리</u> 및 ----- ----- 2. ----- <u>유지관리</u> 및 ----- ----- 3. ----- <u>유지관리</u> 및 -----

종류, 항목, 방법 및 주기	-----
4. 기계설비 <u>유지관리</u>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	4. ----- <u>유지관리</u> 및 ----- -----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2(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) ① (생략)	제8조의2(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관리주체의 <u>성명</u> 또는 상호 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 과 대표자의 성명을 <u>말한다</u>)	1. ----- <u>성명</u> , ----- ----- ----- <u>말한다</u>), <u>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소</u>
2. <u>관리주체의 주소</u>	2. <u>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</u> , <u>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</u>
③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 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9호의3서식의 <u>기계설비유지관 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</u> 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선임사실 변경신고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3(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) ①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는 법 제19조제8항 전단 에 따라 근무처·경력·학력 및 자격 등(이하 “근무처 및 경력 등”이라 한다)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9호의7서식의 기계설비유 지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 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(이하 “경력관리 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	제8조의3(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최근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</u>	3. <u>졸업증명서</u>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 법 시행규칙 부칙	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 법 시행규칙 부칙
제2조(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 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별표	제2조(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 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-----

[illegible]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공동주택:

3. -----

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)의 <u>공동주택</u>: 2023년 4월 17일 <u><신 설></u> ② (생 략)	----- ----- -- <u>공동주택,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: ---</u> 4. <u>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: 2024년 4월 17일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